

의 정 정 보 2011-2호

1. 최근 제·개정 주요 법규 2
2.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9
3.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88
5. 행복한 책읽기 110

모 두 보 기

최근 제·개정 주요 법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가축전염병 예방법 \(7\)](#)
[보험업법 시행령 \(1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강원도 기후변화대책 조례 \(20\)](#)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39\)](#)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7\)](#)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3\)](#)
[경상북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 \(63\)](#)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70\)](#)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84\)](#)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크게 개선 \(89\)](#)
[지방공기업 사장 임용, 까다로워진다 \(92\)](#)
[국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 한번에 전자신고납부 실시 \(99\)](#)
[국가·지방공무원 6급까지 근속승진 확대 \(102\)](#)
[지역 풀뿌리 「마을기업」 500개 집중 육성 \(105\)](#)
[북한이탈주민 고용, 정부가 직접 나선다 \(108\)](#)

행복한 채워기

[한국의 명품문화\(110\)](#)

최근 제·개정 주요 법규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
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3. 가축전염병 예방법 7
4. 보험업법 시행령 13
5.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공포 2011. 1. 4 시행 2011. 4. 5]

1. 제정 이유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역량의 획기적 진흥과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고, 기초과학연구원과 대형 기초과학연구시설의 설치 및 우수한 비즈니스환경의 조성 등의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의 중심지로 성장·발전시킴으로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계획과 정책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법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의 입지는 연구·산업기반의 구축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하되, 그 지정·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도록 함.

나. 기초연구환경의 구축(안 제14조부터 제27조까지)

- 1) 기초과학연구를 통한 창조적 지식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 2) 국가가 거점지구에 대형기초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기업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비즈니스환경의 구축(안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국가가 거점지구에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초연구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우수한 비즈니스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라.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안 제36조부터 제47조까지)

거점지구에 정주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하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거점지구에 국제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 2011. 1. 17 시행 2011. 1. 17]

1. 제안 이유

광역철도의 지정요건 및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명확히 하여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광역철도의 지정요건 명확화 및 지정 폐지 근거 마련(안 제4조)

- 1) 광역철도의 지정요건에 표정속도(表定速度)가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을 추가하고,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는 광역철도의 지정 폐지 근거를 마련함.
- 2) 광역철도의 급행화에 기여하고, 광역철도의 지정 및 재정지원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광역교통시설 국고보조율 신설(안 제12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 1) 명문의 규정 없이 예산상으로 지원하던 간선급행버스체계와 환승시설에 대하여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성하

는 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를, 환승 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비의 30퍼센트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광역교통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추진 중인 간선급행 버스 등 시설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고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방법의 합리화(안 제16조의2제2항)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결정을 위한 평균용적률 산정 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함께 건립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용적률만을 기준으로 평균용적률을 산정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결정을 위한 용적률 산정 시 단독주택·공동주택 등이 건립되는 대지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도록 명확히 함.

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출을 위한 용적률 산정 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함께 건립되는 경우 단독주택 부지의 용적률도 고려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 2011. 1. 24 시행 2011. 1. 24]

1. 개정 이유

2003년 이래로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구제역이 2010년 1월, 4월, 11월 등 3차례나 발생하여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여행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통해 가축전염병이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유입되어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나, 현행 가축전염병 방역·검역 제도는 해외로부터의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고, 가축 소유자 등의 방역·검역 의식도 매우 낮은 실정임.

이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방역·검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의 유입 또는 확산되도록 한 가축 소유자 등에 대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검역 의식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초동대처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림수산물부에 가축전염병 기동방역단을 설치하며, 매몰 장소 후

보지를 사전에 선정·관리함으로써 즉각적인 매몰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도 부여하는 한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제한, 매몰한 토지의 사용제한, 이동제한에 따른 보상금 지원대상 확대, 살처분 농가 등의 심리적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완함으로써 가축방역 업무의 추진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수립하는 가축전염병관리대책에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을 포함시키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의 사체 등을 매몰한 토지 등의 관리실태를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22조제5항 신설).
- 나.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몰에 대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장소 후보지를 사전에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 다. 가축전염병에 대한 초동대처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가축방역기관에 대한 인력·장비 등 지원을 강화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9조의2 신설)

라. 가축전염병이 해외로부터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외국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의 종류, 발생 국가, 일시, 지역 및 여행객의 유의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마.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체류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되, 가축의 소유자등과 동거가족, 고용자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고 출국 시에도 신고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외에 시·도지사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하여 방역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7항).

아. 가축사육시설 등을 출입하는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등은 그 차량과 탑승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모든 출입자가 소독 후 방제복을 착용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 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는 등의 경우에는 농장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차.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매몰 목적 이외의 가축사육시설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카. 보상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가축을 신고한 자 중에서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

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 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3항).

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의 소유자등과 가축방역관 등 가축전염병 방역조치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동통제에 드는 비용이나 주민 교육·홍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국가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발생지역 및 미발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50조제1항, 안 제50조제2항 신설)

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대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2 신설).

너. 가축의 소유자등과 동거가족, 고용자 등이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할 때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호 신설).

더. 가축의 소유자등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체류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이나 검사·소독 등을 거부·방해·기피하는 등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제5조, 제9조의2,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1조, 제48조, 제49조의2, 제50조, 제52조의2, 제57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 2011. 1. 24 시행 2011. 1. 24]

1. 개정 이유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0394호,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됨에 따라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하여야 하는 구체적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보험설계사, 개인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대한 교육기준 마련(안 제29조의2 및 별표 4 신설)

- 1)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보험상품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하고, 개인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도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아야 함.

- 2)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구체화(안 제29조의3 신설)

- 1)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해서는 아니 될 불공정 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등을 규정함.
- 2) 보험설계사의 권익이 보호되고 안정적 영업활동을 보장하여, 이에 기반한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정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마련(안 제33조의2 신설)

- 1)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보험안내자료 또는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에서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도록 함.
- 2) 영향력 있는 판매채널로 성장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감소시켜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보험상품 판매 시 설명하여야 하는 중요 사항 구체화

(안 제42조의2 신설)

- 1)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지급 단계별로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함.
- 2)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요 사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각 단계별로 중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변액보험계약 판매 시 보험계약자의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도록 함(안 제42조의3 신설).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을 변액보험계약으로 정하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의 연령, 월 소득,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확인받고 적합한 변액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도록 함.

바. 보험상품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마련(안 제42조의4 신설)

- 1)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주계약 및 특약

별 보험료 예시, 변액보험의 경우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지급사유 또는 지급시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보험금을 더하여 하나의 보험사고 발생 시에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보험상품 광고 시 금지되는 행위로 정함.

2) 보험상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사. 중복계약체결에 대한 확인 의무 구체화(안 제42조의5 신설)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알려주고, 중복계약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연수과정 및 교육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2호(연수과정 및 교육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3호(교육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24일부터,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4일부터, 제61조 및 별표 6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공포 2011. 2. 1 시행 2011. 2. 1]

1. 개정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남용 또는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수 있는 장기투약 등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수출·제조·판매 또는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용으로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합성마약, 기존 마약류의 대용약물로 남용되는 물질, 불법 마약류 제조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물질 등을 각각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 등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향정신성의약품 취급금지 및 제한 강화(안 제6조제1항)

- 1)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도 남용 등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취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2)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으로 남용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장기간 또는 계속해서 투약하는 경우 등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수출·제조 등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3)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새롭게 도입되는 마약과 마약류 대응 약물을 마약류 및 원료 물질로 추가 지정함(안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별표 6, 별표 8)

- 1) 새롭게 의료용으로 도입되는 합성마약과 마약류 대응 약물의 경우 그 남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 마약류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2) 합성마약인 ‘타펜타돌’을 마약으로 추가 지정하고, ‘프로포폴’ 및 마약류 유사체 등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며, ‘벤질시아나이드’ 등 6개 물질을 마약류 1군 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함.
- 3) 남용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마약류 및 원료물질로 관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과태료 처분기준 개선(안 별표 10 제3호)

- 1) 향정신성의약품의 실제 재고량과 관리대장상의 재고량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대해 행정처분은 그 차이의 정도 및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달리하는 반면,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일률적으로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처분 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음.
- 2) 향정신성의약품의 실제 재고량과 관리대장상의 재고량이 차이가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업무정지 또는 허가·지정취소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를 150만원으로 완화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강원도 기후변화대책 조례 20
2.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39
3.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7
4.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3
5. 경상북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 63
6.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70
7.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84

1 강원도 기후변화대책 조례

1. 제안 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시행('10.4.14.)에 따라 「강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종전 운영 중이던 「강원도 기후변화대책 조례」와 유사·중복된 다수 조항을 흡수·통합함에 따라 흡수된 조항을 삭제하고,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운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 제명을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로 함.
- 나. 연구센터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을 따르도록 함.(안 제2조)
- 다. 연구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 라. 연구센터의 재원조성과 출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4조~제5조)
- 마. 연구센터는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도지사 권한 사무의 일부를 연구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강원도 기후변화대책 조례 전부개정조례

강원도 기후변화대책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각종 계획 및 대책 등의 수립
2. 기후변화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책대안의 개발
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 및 종합정보 관리
4. 출연기관과 타 기관·단체가 의뢰한 연구 수탁사업
5.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및 지원 사업
6. 국내외 기후변화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
7.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재원조성) 연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및 개인이 출연한 출연금과 보조금
2.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구센터의 설립·운영과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출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익사업) 연구센터는 제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도지사는 연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연구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검사나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업무의 보고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기후변화 연구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연구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 으로 할 수 있다.

□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법인설립 허가증을 발급하고 법인설립 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도지사는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정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강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강원도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는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도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도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4. 도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도는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

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도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7. 도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 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3조(도의 책무) ① 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 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도는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 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 성장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도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

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③ 주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강원도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강원도 녹색성장 추진계획

제7조(강원도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 절차)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도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강원도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강원도 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시·군과 연계한 녹색성장 추진체계
 6. 그 밖에 도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도지사는 강원도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강원도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도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도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지방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지사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제1항의 강원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도지사는 강원도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강원도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할 때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 평가지표의 개발 등이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대상기관은 강원도 추진계획의 소관부서 및 기관으로 하

며 강원도 추진계획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나눠서 평가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강원도 추진계획 이행상황 점검·평가지침을 매년 작성하여 강원도 추진계획 소관 부서 및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강원도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장 강원도 녹색성장 추진체계

제9조(강원도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도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 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지사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녹색성장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강원도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강원도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한 차례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성장·산업 분과위원회: 강원도 추진계획, 재정, 법제도 및 녹색기술, 녹색성장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등의 분야
2. 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원회: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배출권거래제 등의 분야
3. 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녹색생활 확산, 녹색국토, 녹색건물,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물관리 등의 분야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외에 국제협력, 국제협상, 기업고충처리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과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에 요구할 수 있다.

1. 자료의 제출 또는 소속 공무원의 의견제시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의 출석 요구
3. 그 밖의 소관 분야와 관련한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의 개최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①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녹색성장책임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검토
3. 강원도 추진계획의 수립 지원 및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관련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지정한 사항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제15조(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도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 도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절약형 차량·어선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⑤ 도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도지사는 국가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도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도지사는 녹색건

축물 확산을 위하여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한다.

③ 도지사는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보자원의 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한다.

제18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도지사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도시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2. 에너지·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지역 슬로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4. 지역의 폐급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제19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①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강원도의 지역실정에 맞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과 관련

하여 체계적인 조사·연구, 중장기 대응전략 마련, 저탄소 시책개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20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건축·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 도, 기업 및 주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4. 도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제21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도지사는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

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강원도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도지사는 주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3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주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3434호, 2010.11.1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 「강원도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

1. 제정 이유

- 학교의 독서교육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안 제3조)
 - 독서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시행
- 학교독서교육위원회 설치(안 제4조)
 -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 독서교육 연구 지원(안 제7조)
 - 독서교육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 교육단체, 교원에 대해 연구비 지원
- 독서행사(안 제8조)
 - 학교 독서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
 -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지도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해 포상, 표창, 장학금 지급
-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안 제9조)
- 학교도서관운영 활성화(안 제10조)

- 도서구입비, 운영비 지원
-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사서교사 미배치 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해 주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독서교육”이란 학생들에게 행하여지는 다양하고 의미있는 독서활동을 통해 독서태도, 지식, 기술, 흥미, 습관 등의 형성과 지적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교육과정상의 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독서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독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가 설치된 학교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으며,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나 12학급 이하 규모의 학교에서는 위원회를 학교교육과정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독서교육 전담부서) 교육감은 독서교육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전담팀을 둘 수 있다.

제6조(독서활동지도) 학교의 장은 학교급과 여건에 따라 독서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도한다.

제7조(독서교육 연구 지원) 교육감은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나 교육단체, 교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독서 행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학교 독서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 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지도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서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공도서관과의 협력) 학교는 독서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과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 (학교의 독서 진흥)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의 전체를 통하여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학교의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도서관의 신설·확충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독서 자료의 확보와 독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독서 교육 관련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 모임의 운영 장려, 학교 도서관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 교사나 독서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1. 학교도서관운영계획
 2. 자료의 수집·제작·개발 등과 관련된 예산의 책정
 3. 자료의 폐기·제적
 4. 학교도서관의 행사와 활동
 5. 그 밖의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독서교육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9조(독서교육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상황

2. 학생들의 독서수준

3. 그 밖에 학생들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제안 이유

- 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나. 도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건강 보호와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도지사는 교육감,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도시공원 등에 금연구역을 지정 및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 나. 금연구역 지정 시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고 모양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 다.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도지사가 직접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증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라. 금연환경 조성, 도민참여 유도, 정책반영을 위하여 공

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금연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을 위촉하고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해당 시·군의 정기적 평가를 시책에 반영하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사.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도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제4조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흡연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청소년의 흡연예방)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청

소년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도민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교육감 및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
4. 도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가스충전소, 주유소
5. 그 밖에 도지사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경남도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이 금연환경 및 간접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 및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제4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민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도지사는 도민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교육감 및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공청회 등) 도지사는 도민에게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

동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등) ① 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시·군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정 이유

- 경상북도의 세계유산과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랑스러운 세계유산을 널리 알려 이해와 관심을 도모
- ※ 석굴암·불국사('95.12.9), 경주역사유적지구('00.12.2), 한국의역사마을 하회와양동('10.8.3)

2. 주요 내용

- 도의 우수한 문화·자연·복합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노력(안 제4조)
- 세계유산의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경상북도세계유산위원회 설치(안 제6조)
 - 위원장 : 행정부지사
 - 위 원 : 부위원장(호선)포함 60명 이내, 임기 2년(연임가능)
- 분과위원회 설치 및 분장업무 규정(안 제13조)
 - 분과위원회 위원장(호선)포함 30명 이내, 임기 2년
 - 신라유적분과위원회, 역사마을분과위원회
- 분과위원회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4~15조)
- 예산의 범위안에서 세계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지원(안 제17조)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경상북도의 세계유산과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일람표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2. “경상북도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 세계유산일람표에 등재된 ‘석굴암·불국사’, ‘경주역사유적지구’,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양동’을 말한다.
3.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세계유산은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탁월한 가치를 지닌 자산이므로 이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활용하면서 미래세대에 양호한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세계유산의 등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의 우수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

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5조(세계유산의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알려야하며, 시장·군수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 등재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세계유산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세계유산의 보수와 정비에 관한 사항
6. 세계유산 주변 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시 관계기관 및 단체, 세계유산 지구 및 세계유산소재 마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경북도내 우수한 문화·자연·복합유산에 대하여 세계유산의 등재추진 및 보존관리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 등재지역간 교류와 제휴에 관한 사항
4. 세계유산과 관련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사업개최에 관한 사항
5.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 및 도민참여에 관한 사항
6.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세계유산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 전문가
2. 경관보전 관련 전문가
3. 관광 및 활용 관련 전문가
4.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세계유산 관련 전문가
5. 문화재청장 및 세계유산 소재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6. 세계유산 지역주민대표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자
7. 기타 문화재·행정·교육·언론 등 관련분야 전문가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재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세계유산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신라유적 분과위원회와 역사마을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별 분장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라유적 분과위원회 : 경상북도 세계유산(‘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양동’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과 세계유산의 등재신청, 잠정목록대상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사항

2. 역사마을 분과위원회 : 경상북도 세계유산 중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양동’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별 위원의 배속은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2개 이상의 분과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 기능) 분과위원회별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라유적 분과위원회 : 제7조를 준용한다.

2. 역사마을 분과위원회

가. 역사마을의 진정성, 완전성 유지에 관한 사항

나. 마을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마을에 전승되는 고유기술 보전 및 재료 보존에 관한 사항

라. 관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마. 전통공동체 문화의 유지·전승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대행하고, 지정한 위원이 없으면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의견청취)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보존·관리) ① 세계유산은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에게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③ 관계공무원은 세계유산에 대한 관리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경비보조 등) ① 도지사는 세계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기타 보조금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홍보 등) ① 도지사는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세계유산을 널리 알려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문화재보호법

제98조 (세계유산의 등록 및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11조에 따라 현저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에 등록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록신청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세계기록유산의 등록,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의 선정 등을 비롯하여 인류 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재의 국외 선양 사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록 또는 선정된 문화재(이하 "등록세계유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성질의 구분에 따라 등록 또는 선정된 때부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주변 경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 11 조

1. 협약가입국은 될 수 있는 한, 자국 영토내의 문화 및 자연유산중 동 조항 제2항에 의거한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잠정목록을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목록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목록제출에는 해당 유산의 소재지 및 중요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2. 동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협약가입국이 제출한 목록에 기초하여 제 1조 및 제 2조에 규정된 문화 및 자연유산을 구성하는 유물로, 동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비추어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목록(세계유산목록이라고 칭함)를 작성하여 매년 갱신하여 공포한다. 최신 목록은 적어도 1년에 1회 배포된다.
3. 세계유산목록에 유산을 등록함에 있어서는 해당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2개국 이상의 국가가 주권 및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영역내에 존재하는 유산의 등록은 해당 당사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동 위원회는 사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계유산목록에 등록된 유산 중 주요 보존작업이 요하고 이 협약에 의거 지원을 요청한 유산을 "위험에 빠진 세계유산목록"으로 작성하고 이를 갱신하고 공포한다. 이 목록에는 보호작업에 요청되는 경비의 견적을 포함시킨다. 이 목록에는 문화 및 자연유산 중 심각하고 중대한 위험에 처한 유산만을 등록하여야 하며 그 위험으로 손괴가

진행됨에 따른 멸실의 위험, 대규모 공적 또는 사적 공사, 급격한 도시 개발 또는 관광 개발을 위한 공사, 토지의 이용 또는 소유권의 변동에 기인된 파괴, 미상의 원인에 의한 중대한 변경, 각종의 이유에 의한 방기, 무력 분쟁의 발생 또는 위협, 재난 및 대변동, 대화재, 지진, 홍수, 화산 분출, 수위의 변화, 홍수 및 해일과 같은 중대하고도 특별한 위험 등을 들 수 있다. 동 위원회는 언제라도 긴급시 '위험에 빠진 세계유산목록'에 새롭게 등록할 수 있으며 그 등록에 대해 즉시 공포한다.

5. 동 위원회는 문화 및 자연유산중 제 2항 및 제 4항에 규정된 목록에 포함될 유산의 등재 기준을 정한다.
6. 동 위원회는 제 2항 및 제 4항에 언급된 목록 중 어떤 것이든 그 등재를 거부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자연 및 문화유산이 위치한 협약가입국의 의견을 구한다.
7. 동 위원회는 해당국의 동의를 얻어 제 2항 및 제 4항에 규정된 목록의 작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를 조정하고 장려한다. ♠

1. 제안 이유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3조 5000여억원이상이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으로 올해 초,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입지선정을 두고 대구·경북·울산, 충청권, 광주권 등 각 지역별 유치경쟁이 치열한 상황임.
-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지역 내 유치활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책사업 유치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제안함.

2. 주요 내용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내 유치를 위한 관련단체 구성과 설립 등 유치 활동과 설치결정 이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대상 활동을 규정함(안 제2조)

- 도지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구성되는 기관단체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도지사는 지원대상 기관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경상북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지역 내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책사업 유치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활동)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지역 내 유치를 위한 관련단체의 구성과 설립 및 홍보, 기획 등 유치에 필요한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하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지역 내 설치결정 이후 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제3조(지원대상 기관단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구성되는 기관과 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필요할 경우 유치활동과 관련한 순수 민간기관단체나 기구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행·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과 유치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지원대상기관이나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

무원을 지원기관이나 단체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각종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지원하는 경우 이미 구축된 연구·산업기반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지역간 협력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공공기관의 범위 등)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파견근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

1. 제정 이유

- 도내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의 문화욕구 해소와 문화감수성 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 저소득계층의 문화향수권 보장으로 계층간의 문화격차해소와 도민의 문화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함.

2. 주요 내용

-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저소득계층”, “문화바우처”, “문화관련 단체 및 협의회”에 대한 용어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저소득계층의 문화향수권 확보를 위한 도지사와 이용자, 바우처 제공자 등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안 제3조)
- 문화바우처의 지원대상을 저소득계층으로 하고, 지원범위를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연간 개인별 5만원상당에서 관람과 이용할 수 있는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 문화바우처 사업을 시군에 위임하거나 문화관련단체 및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문화바우처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 문화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과 지역주관처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저소득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과 구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문화바우처”란 저소득계층이 필요로 하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과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관련 단체 및 협의회”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체와 문화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저소득계층의 문화 향수권 확보와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바우처를 이용하는 도민은 매매와 양도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문화관련 단체 및 협의회는 지역의 문화 수준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문화바우처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의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①도지사는 저소득층의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과 이용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문화바우처 이용금액은 개인별 연간 5만원상당으로 한다.

③도지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저소득계층이 공연·전시·영화 등의 관람을 할 경우 교통비와 식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운영방법) ①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군을 통해 운영하거나, 문화관련 단체 및 협의회에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문화바우처 사업의 위임이나 위탁의 경우 사업추진과 관련된 행·재정적 절차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권장사업) 도지사는 문화바우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저소득계층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창작 활동
- 2.저소득계층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기회와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문화 인프라 확충
- 3.도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활동

4.문화바우처 이용과 관련된 경비지원

5.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평가) ①도지사는 문화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과 지역 주관처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15조(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①국가는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서(圖書)나 문화예술 재화·용역의 구입을 주된 사용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을 인증(認證)하고, 그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상품권의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복권기금의 설치) ①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설치한다.

②복권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2. 복권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2005.12.29, 2006.2.21, 2007.4.11, 2009.5.21, 2009.10.21, 2010.6.8>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 5의2.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6. 지방자치단체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은 그 비율을 100분의 5 이내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9.10.21>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장애인 및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4. 문화·예술 진흥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④복권으로 인한 사행심을 억제하기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비용 및 복권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급한다.
- ⑤복권기금의 배분방법·배분시기 및 배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1.30, 2010.12.7>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 100분의 12.583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 100분의 10.371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 100분의 5.310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100분의 6.356

5.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 100분의 14.286
6. 지방자치단체 : 100분의 17.267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 100분의 17.267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100분의 4.286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 100분의 5.846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100분의 6.428

②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복권위원회가 의결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06.2.2>

③복권위원회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서 확정된 경우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을 배분받는 기금 등의 재원소요와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배분시기 및 배분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2.2, 2006.12.29>

[별표] <개정 2010.6.8>

기금 등에 배분된 복권수익금의 사용용도(제23조제2항 관련)

기금 등	사용용도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사업. 다만, 같은 항 제3호의 규정 중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2.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1.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사업 2.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 학교의 운동경기부의 육성을 위한 사업 4.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사업 5. 국내외 체육대회와 그 관련행사 지원사업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 각 호의 사업
4.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1. 국민주택건설사업 2.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한 융자 3.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1. 중소기업 창업 지원 2. 중소기업구조 고도화 지원 3. 지방중소기업 육성 지원 4. 산업기반 조성 지원
6.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 각호의 사업
7. 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복지 2. 지역개발사업 3.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제4항 각 호의 사업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사업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 각 호의 사업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의3의 사업

□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보조사업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6.11>

제4조(보조대상)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09.6.11>

1.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보조사업자는 법령,보조금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①도지사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도지사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①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민간 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분야별 성격에 따라 수시로 구성하고, 수탁기관의 심사·선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당해분야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 제안 이유

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경우 상당수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되는 최저생계비로는 생활이 어려워 아파트 임대료, 관리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실정임

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지원조례는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전기 요금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됨

다. 시 차원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에 대하여 공동전기요금의 지원을 통해 관리비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관리비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인천광역시장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거주자에 대하여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다만,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중

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등, 관리동 전기요금
-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 전기요금
-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다. 관리주체는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청구하여야 함

- 시장은 관리주체의 지원비용 청구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 요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 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공동전기료”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등, 관리동 전기요금

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3.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 전기요금
4.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① 관리주체는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의 지원비용 청구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 요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1.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크게 개선 89
2. 지방공기업 사장 임용, 까다로워진다 92
3. 국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 한번에 전자신고납부 실시 99
4. 국가지방공무원 6급까지 근속승진 확대 102
5. 지역 풀뿌리형 「마을기업」 500개 집중 육성 105
6. 북한이탈주민 고용, 정부가 직접 나선다 108

1.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크게 개선

-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및 시·도 등 100개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수준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수준 현장진단은 지난해 9월 1,023개 기관에 대한 자율진단결과를 토대로 100개 기관(중앙 40, 시도16, 시군구4, 공사·공단18, 교육기관22)을 선정하여 지난해 11월까지 실시되었다.
- 100개 기관중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는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체 기관을 선정했고, 공사·공단 및 교육기관 등은 주민번호 노출에 따라 컨설팅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 진단은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침해대응 등 3개 분야 총 18개 지표에 대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우수(90이상), 보통(70이상~90미만) 미흡(70미만)으로 등급화했다.
- 진단 결과, 중앙부처 및 시·도 등 56개 기관은 전년 대비 3.0점 상승한 94.3점으로 대폭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사·공단, 교육청 및 대학 등 44개 기관은 71.7점을 받아 개인정보 암호화 분야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이용 분야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별 보호수준을 살펴보면

- ‘08년 이후 매년 수준진단에 참여하고 진단결과가 업무 평가에 반영되고 있는 중앙 및 시도의 경우 기관의 인식제고, 보호시스템의 도입 등 개선을 통해 전반적으로 보호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 분야별로는 개인정보보호정책환경분야 95.1점, 개인정보처리분야 94.8점, 개인정보침해대응분야 92.4점을 기록했다.
- 반면에 공사·공단, 교육청 및 대학 등 금년에 신규로 현장진단에 참여한 기관은 진단결과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 분야별로는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분야 74.2점, 개인정보처리분야 72.3점, 개인정보침해 대응분야 79.3점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는 현장진단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공기업(131개)의 적극 참여와 수준향상을 위해 경영평가지표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항목을 반영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 “국회에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가 강화되어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수준이 크게 향상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기관별 업무수행 환경을 고려한 지표를 개발하여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고, 사업자들이 스스

로 진단할 수 있는 상시 수준진단 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지표
----	----------------------

분야		진단지표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정책기반	1. 개인정보 보호 조직 및 인력
		2. 개인정보 보호 예산
		3. 개인정보 보호 교육
		4. 개인정보 보호 방침
	기술기반	5.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6.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 통제
		7. 개인정보 저장·전송시 암호화
개인정보 처리분야	수집 및 보유	8. 개인정보 수집
		9. 개인정보 파일대장
		10. CCTV
		11. 개인정보 저장 및 출력매체
	이용 및 제공	1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이용
		13. 처리정보 이용 및 제공
	파기	14. 개인정보 파기 절차
		15. 저장매체 등 파기
개인정보 침해대응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대책	16.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대책
	개인정보유출 대응절차	17.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개인정보 침해 구제절차	18. 개인정보 침해 구제



2. 지방공기업 사장 임용, 까다로워진다

□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인사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제정해, 지방공사·공단 자체 인사규정 등에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 이번에 마련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은 사장 임용과 관련하여 불공정시비 및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 그동안 지방공기업 직원채용 등에 관한 기준이 없어 해당 기관의 정관에 따라 자체 내규에 의해 사장이 임용되어 왔다.

* 불공정시비 및 의혹 : 채용공고 생략·단축, 시험생략, 내부시험위원 임명, 서류전형·면접생략, 점수 몰아주기 등

□ 이번 운영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우선, 공기업 임원임명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절차, 심사기준·방법 등 구체적 절차를 명시하고, 임원 선임의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 임원의 자율·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 설정 등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했다.

○ 투명한 윤리경영을 위해 임원의 성과계약 체결시 청렴

의무를 명시하며, 위반 및 사회문제가 될 경우 홈페이지 공개, 성과급 미지급 등 인사·보수에 불이익을 반영하도록 했다.

□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시험은 공고와 경쟁을 통해 공무원 채용과 같이 ‘공개경쟁’ 시험 또는 ‘경력경쟁’ 시험을 거쳐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 채용시험공고 의무화, 시험위원의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하여 균등한 기회 제공과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 그 밖에 채용요건, 채용절차, 시험방법, 교육훈련, 보직관리, 성과관리 등 지방공사·공단 특성에 따라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 한편, 임직원의 공금횡령, 금품수수, 수익금 횡령 등 부패행위 발생시 내부 징계와 더불어 사법기관에 고발을 의무화하도록 고발대상, 방법 등 범죄 고발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 200만원이상 공금횡령자 및 금품수수자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고발조치하고, 고발기준, 고발시기, 고발목인에 대한 책임 등을 명시하여 규정하도록 했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인사운영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인사운영 전 과정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인사운영의 공정성 부문을 경

영평가에 반영하고 성과급 등을 차등지급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다.

-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마련을 통하여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채용,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가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첨부 : 1.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요약 1부
2. 지방공기업 임직원 범죄고발규정 요약 1부.

□ 제정배경

- 그동안 지방공기업 임직원 채용 등에 관한 공통된 기준이 없이 자율적으로 정관 또는 자체내규로 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채용 등 인사운영과정에서 불공정 시비 및 의혹 제기
 - * 채용공고 생략·단축, 시험생략, 내부시험위원 임명, 서류전형·면접생략, 면접점수 몰아주기 등
- 지방공기업 임직원 채용 등 인사운영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인사운영 가이드라인으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제정·시행
 - *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노조 등 의견수렴 5회 실시(‘10.9월~12월)

□ 주요내용

- 임원 선임의 공정·투명성 제고 및 선임과정 공개 등 명시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절차·방법, 심사기준 등 구체적 절차 명시 및 선임과정 공개
- 자율·책임경영체제 정착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
 - 직위별 직무수행 및 자격요건 설정, 임원 성과계약제, 청렴의무제 명시, 위반시 공개 및 성과급 미지급 등 인사·보수상 불이익 반영

- 공기업 직원 채용시험은 공고와 경쟁을 통한 공무원 채용과 같이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시험 채용을 원칙으로 함
 - 채용시험 공고 의무화, 시험위원 외부 전문가 참여 등 균등한 기회 제공과 시험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 채용요건, 채용절차, 시험방법, 교육훈련, 보직관리, 성과관리 등 공기업 특성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토록 명시

- 임직원의 공금횡령, 금품수수, 수익금 횡령 등 부패행위 발생시 내부징계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 고발 의무화 등 범죄 고발규정 마련
 - * 향후 인사운영 전 과정 모니터링 실시 및 인사운영 공정성 경영평가 강화

□ 제정배경

-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지방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 증가
 - 이는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범죄 발생시 고발대상, 방법 등 공통된 범죄 고발기준 부재* 및 온정주의적 처벌이 원인
 - * 공무원은 형법, 형사소송법, 특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 윤리법 등 개별 법령에 명확한 벌칙조항이 있으나, 공기업 임직원은 공무원 의제조항이 없거나 불명확
- 부패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공기업 육성을 위해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내부징계와 더불어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의무화하는 등 명확한 기준 필요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범죄고발 지침 제정 권고(2009년 9월)
 - *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총리훈령, 1994년)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고발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기업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 대하여만 적용토록 규정

□ 주요내용

- 임직원이 업무관련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범죄발생시 반드시 고발 조치
 - 최근 사회적으로 도덕성·공정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200만원 이상 공금횡령과 금품수수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고발토록 조치

-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의 범죄에 대한 고발 시기를 명확히 규정
 -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업무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 된 즉시 고발하도록 하여 고발지연 방지

- 고발사건 묵인 고발책임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않고 묵인한 고발(감독)책임자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징계 

3. 국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 한번에 전자신고납부 실시

- 행정안전부는 국세청과 공동으로 소득세, 법인세 신고시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소득세(지방세)를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한번에 전자신고납부하는 서비스를 2011년 1월 11일부터 실시한다.

※ 위택스(WeTax)는 인터넷으로 전국의 지방세 신고·납부하거나 지방세관련민원처리나 정보검색 등을 제공하는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 운영)

- 그간 국민들은 국세인 소득세(원천징수,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고 관련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자치단체나 은행을 방문하거나 위택스(Wetax)에 재접속하여 전자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원천징수(매월 다음달 10일), 종합소득세(매년 5월), 법인세(매년 4월) 신고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홈택스와 위택스간 소득세·법인세 전자신고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1월 11일부터 동시 전자신고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용방법은 납세자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

여 소득세(원천징수,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소득세 신고분 납부』를 선택하면 관련된 지방소득세가 위택스에서 바로 전자신고납부가 된다.



- 이번 『국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 동시 전자신고납부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들은 세금신고를 위한 행정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 연간 67억이 절감되고, 자치단체는 연간 614만건의 세무서 발행 지방소득세 납부서의 전산수납 처리로 인한 인건비를 연간 370억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 지방소득세(소득분) 신고현황('10년)	
- 원천세 특별징수(397만건/24,713억), 법인세(30만건/31,149억), 종합소득세(187만건/7,189억)	
** 【방문 교통비 절감내역】	
- ① 6,140,000건×② 1,100원 = 6,754,000,000원	
① 위택스 동시 전자신고 지방소득세건수 : 6,140,000건	
② 서울 마을버스왕복교통비 : 1,100원	
*** 【인건비 절감내역】	
- ① 6,140,000건×② 5분/60분×③ 4,100원/시간×④ 230명 = 37,056,128,000원	
① 위택스 동시 전자신고 지방소득세건수 : 6,140,000건	
② 절감시간 : 10분(소득분지방소득세납부서 과세자료 입력 및 수납처리(2.5분*2))	
③ 시간당 최저임금 : 4,100원(노동부)	
④ 투입인력 : 230명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국민들이 국세 소득세, 법인세를 홈택스에 전자신고한 후, 이와 관련된 지방소득세신고납부를 위해 행정기관 및 은행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사이트에 재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아울러, 소요시간 및 교통비 절감 등 국민을 위한 생활공감차원의 납세편익서비스로서 획기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

4. 국가·지방공무원 6급까지 근속승진 확대

□ 11월 10일, 6·7급 정원 통합운영, 다자녀 공무원의 육아 휴직 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인정 확대, 엄정한 시보제도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을 동시에 입법예고 했다.

○ 이번 개정은 국민들을 직접 대하는 일선 실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무원 채용시 자질 검증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정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먼저,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원이 없어서 승진이 불가능했던 우수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재 7급까지만 운영되던 근속승진제도를 6급까지 확대 적용한다.

○ 7급에서 12년 이상 장기 근무한 일반직·기능직 중 근무실적이 상위 20% 이내인 공무원은 심사를 거쳐 6급 정원의 15% 이내에서 승진임용하여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에게 성과에 따른 승진기회를 부여했다.

※ 현재 7급 12년 이상 재직자는 국가직 1,447명, 지방직 6,573명으로, 시행 첫 해에 총 1,606명 승진 가능(국가직 290명, 지방직 1,316명)

□ 또한, 공직사회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보다 앞장 설 수 있도록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배려도 확대했다.

○ 현재 육아휴직기간은 자녀당 3년까지 가능하나, 재직기간으로는 1년만 인정하고 있어

- 통상적으로 재직기간이 짧은 가임기 공무원은 장기간의 육아휴직 사용시에 승진상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 향후 셋째 자녀부터는 모든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하는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어

- 다자녀 공무원들이 승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 한편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보임용 제도」를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 5급 1년, 6급 이하 6개월간의 시보임용기간 중 교육·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소속 장관 책임하에 심사위원회의 의결(지방은 자치단체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 그 외, 개별 직위의 업무활동·직무수행요건과 공무원 개

인의 윤리의식·역량·경력 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를 시행하도록 공무원 **보직관리** 기준을 정비했다.

- 또한, 전문 회계인력 선발을 위한 **회계직류**를 신설하여 발생주의·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따른 국가 회계 선진화를 지원한다.

□ **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공무원 단체 및 일선·실무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좀더 봉사하며 보다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개정배경을 설명하고,

- “**시보 제도** 엄정관리 운영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

5. 지역 풀뿌리형 「마을기업」 500개 집중 육성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500개를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오는 31일부터 시군구별로 사업단체를 공모한다.

○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의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 자원 등)을 활용해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 지난 2010년도에 시범도입 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안정적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둔 마을기업으로 변경하고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상사업 예>

① 지역자원활용형 : 지역특산품·문화·자연자원활용 사업

* 전북 완주 「건강밥상 1000꾸러미 사업단」 : 월 1억 매출, 도시 회원수 1,249명

② 친환경·녹색에너지 사업 : 자원재활용 및 자전거 활용 사업 등

* 서울 종로구 멍제마을 사업단 : 자투리 원단 활용, 고유브랜드 ‘맨드리’ 개발 및 의류 판매

③ 생활지원·복지형 :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경기 오산시 「뷰티폴 휴 세탁소」 : 정신장애 직원(6명 근무) 중심의 공동체 기업

□ 2011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시군구별 사업단체 공모(1월 31~2월 11)를 통해 전국적으로 500개의 사업단체를 선정(2월)

하여,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 향후 3년간(2011~2013년) 총 1천개의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공동체 단위의 안정적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 한편, 2011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단체에게는 최장 2년간 총 8천만원을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연차별(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로 지원하고,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금융지원 및 경영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마을기업에 대한 행정·기술지원을 위해 시군구-읍면동-농업기술센터를 연계한 지역단위의 마을기업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4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송영철 행안부 지역발전 정책국장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일자리 지원이 아닌 지역공동체 단위의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및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구자리 「채울」 (경남 하동군)

- 조직형태 : 하동군 다문화이주여성 공동체
- 설립목표 : “배우면서 일하고 즐기면서 돕는다”
- 조직구성 : 대표 외 이주여성 9명 * 복지관 한글교실 참여자 중심
 - 지원조직 : 농협 하동지부, 오가니제이션(사회적기업) 등 14개 단체
 - 컨설팅사 : 지역활성화센터+뜻있는 주식회사 공동
- 사업비 : 86백만원(회원 출자 10백)
- 사업내용 : 다문화음식점 및 찻집, 난장 가판대 운영, 하동 특산물 인터넷 판매, 결혼이민여성 취업지원 및 통번역 활동
- 향후계획 : 주식회사로 전환(법인화, '11. 12월)
- 연락처 : 063-240-4318(완주군청)

□ 건강밥상 꾸러미사업단(전북 완주)

- 조직형태 : 영농조합법인(건강한 밥상)
- 조직구성 : 대표 외 지역 주민 100명 참여 *완주군에서 주도적으로 결성
 - 컨설팅 및 중간지원조직 :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 협력기관 : 인덕마을(두레농장), 구이면 안덕마을(과워영농조합) 등 30여개의 완주군 마을회사
- 사업비 : 76백만원(국도비 76백)
- 사업내용 : 마을별 기획생산, 계약농산물의 재배 및 선별 포장, 유통 판매
- 사업성과 : 도시회원 수 1,249명 확보, 월 1억 매출

- 향후계획 : 일자리 20여개 창출, 도시회원 3만명, 매출 300억('14년)
- 연 락 처 : 055-880-2192(하동군청) [☎](#)

6. 북한이탈주민 고용, 정부가 직접 나선다

□ 북한이탈주민의 정부 내 고용을 높이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부내 활용 계획」을 마련, 2월 1일(화)부터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

- 북한이탈주민은 연간 3,000여명(현재 약 2만명)이 입국하는 추세로 우리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부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 북한이탈주민 : (05) 7,687 → (09) 17,984 → (10) 20,400 → (13) 30,000 예상

- 특히,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취업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부터 북한이탈주민을 적극 채용함으로써 사회전반에 관심을 확산시키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 정부는 우선 금년도에 각급 행정기관에서 행정보조인력(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채용하는 인원의 1% 이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계획이다.

- 중앙 및 지방에서 연간 신규로 채용되는 행정보조인력이 약 2만여명으로 추정되므로, 1%를 적용할 경우 약 2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행정보조인력으로 정부 내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각급 행정기관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등 북한이탈주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원 등으로 최대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 현재 북한이탈주민 14명이 통일부, 서울·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 중

-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지역 고용센터, 하나센터 등에 취업을 신청하면, 각급기관과 연계하여 적극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 채용된 북한이탈주민은 조직 및 업무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현·퇴직 공무원 등을 1:1 멘토로 지정하고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서필언 인사실장은

- “공정사회에서는 무엇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며,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행복한책읽기



도서명 : 한국의 명품문화

저자명 : 하중호

출판사 : 삼양미디어

출판년 : 2010년

페이지 : 280

가 격 : 16,000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우리의 명품문화!

문화유산, 인사, 예절, 세시풍속, 효, 호칭 문화 등
우리 문화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책이 나왔다!

나는 우리 문화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만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외래문화의 홍수 속에 빠져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내가 먹고 입고 생활하는 공간 속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는 정신문화조차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물론 인간은 점점 더 편리를 추구하고 그래서 찬란한 현대문명을 누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인가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번 자문해 보라. 그런 현대문명 속에 사는 나는 행복한가? 행복하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조차 힘든 게 오늘의 현실이다.

점점 공허해지고 인간성이 상실되어 가는 현대문명 속에 자신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은 우리의 것을 다시 되새기는 것이다.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정신 속에 진정한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비법이 다 들어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의문이 생기는 사람들은 이 책을 한 번 읽어보라.

이 책에는 우리 민족의 고대로부터 현재까지의 우리 것에 관한 문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우리네의 고유한 전통과 풍습과 예절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우리 민족의 찬란한 정신문화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아마도 이 책 속에 담긴 우리의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내가 진정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과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진정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비결을 이 책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우리의 명품문화를 크게 명품 문화유산, 서양의 에티켓과 대비되는 명품예절, 품격을 높여주는 인사와 호칭문화, 삶에 의미와 행복을 더해주었던 세시풍속들, 그리고 자랑스러운 효(제사 문화 포함) 문화 등으로 나누어 다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앞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기 위해 우리가 고쳐야 할 의식과 문화들에 대해 다루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 모

의 정 정 보

❖ 발 행 일 : 2011년 2월 10일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

전화 (042) 606-5021 / 팩스 (042) 606-5029